

운용소득 사용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①공익법인명	학교법인 신일학원	②사업연도	2023.03.01. ~ 2024.02.29.
--------	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

구분	⑦ 해당 사업연도	⑧ 1년 전 사업연도	⑨ 2년 전 사업연도	⑩ 3년 전 사업연도	⑪ 4년 전 사업연도	⑫ 5년간의 평균 (⑦~⑪의 평균)
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	365,594,755					
④사용기준액 (③× $\frac{(80)}{100}$)	292,475,804					
⑤1년 내 사용실적	365,594,755					
⑥과부족액 (⑤ - ④)	73,118,951					

2.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

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	가산액				차감액				
	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	⑮ 해당 사업연도 (과세기간)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급에 산입된 금액	⑯ 기타	⑰ 소계 (⑭+⑮+⑯)	⑱ 출연 재산 양도 차익	⑲ 의제 배당액	⑳ 법인세 등	㉑ 이월 결손금	㉒ 소계 (⑱+⑲+ ⑳+㉑)
1,184,856,043				1,184,856,043					
⑳ 차가감 소득 (⑬+⑰-㉒)	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						㉓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(㉓+㉔)		
	㉔ 기준미달사용액	㉕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	㉖ 소계 (㉔-㉕)						
1,184,856,043							1,184,856,043		

작성방법

1.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

- 가. "㉑"란부터 "㉒"란까지는 "㉑"해당 사업연도"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["㉑"과부족액"란이 음수(-)인 경우를 말합니다]에만 적습니다.
- 나. "㉑"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"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"㉑"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"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- 다. "㉑"사용기준액"란은 "㉑"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"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%를 초과하여 출연·취득한 공익법인,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%(50%)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, 1996년 12월 31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특정주식 5%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.
- 라. "㉑"1년 내 사용실적"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다음의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.
 - 1)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
 - 2)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
 - 3)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(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%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)
 - 4)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"㉑"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"의 금액에 "㉑"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"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
 - ※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2.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

- 가. "㉑"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"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(「법인세법」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)을 적습니다.
- 나. "㉑"고유목적사업준비금"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.
- 다. "㉑"기타"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"㉑"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"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금액(예: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)을 적습니다.
- 라. "㉑"출연재산 양도차익"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.
- 마. "㉑"의제배당액"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·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(합병·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)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.
- 바. "㉑"법인세 등"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·주민세·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사. "㉑"이월결손금"란은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- 아. "㉑"기준미달사용액"란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"1.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"의 "㉑"과부족액"란이 음수(-)["㉑"해당 사업연도"와 "㉑"5년간의 평균"이 모두 음수(-)]인 경우 작성하며, 이 금액은 "㉑"해당 사업연도" 과부족액(-)의 절대값과 "㉑"5년간의 평균" 과부족액(-)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.
- 자. "㉑"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"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여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.